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15. 9. 17.

사회건설위원회

#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9월 1일

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9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제19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(2015. 9.14)

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도시국장 김종호)

가. 제안이유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에서 위임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의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」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 신설(안 제4조제11항)
-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정비 및 기능 일부 조정(안 제5조)
-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 추가 신설(안 제5조의3제5호)
- 안전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신설(안 제5조의4)

-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설치 등 신설(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)
- 다른 법령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이태선)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2014.1.17 시행, 2013. 7. 16 개정)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「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 라인」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근거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
#### ○ 주요 내용은

-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제11항을 신설함.
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제1, 제2 분과위원회의 명칭을 분과위원회로 변경하여 기능 일부를 조정하고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함.
-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활성화와 심의 기간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최초 심의를 포함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규정을 신설함.  
이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4조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불필요한 반복 심의를 제한하고 심의 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9조의2에 공동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신설함.  
이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과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3조제2항의 권한 위임 사무처리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됨.

-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음.

#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78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5. 9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에서 위임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의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」를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 신설(안 제4조제11항)
- 나.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정비 및 기능 일부 조정(안 제5조)
- 다.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 추가 신설(안 제5조의3제5호)
- 라. 안전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신설(안 제5조의4)
- 마.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설치 등 신설(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)
- 바. 다른 법령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사항
  - (1) 규제심사 : 대상사무 없음
  - (2) 부패영향평가 : 평가실시(의견있음)
    - 안 제9조(수당 등) : 여비 지급에 있어,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, 과다 혹은 과소지급의 사례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여비운영을 위해 「공무원 여비규정」을 준용토록 권고함.(의견반영)

(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실시(의견 없음)

라. 기타사항

(1) 입법예고(2015. 7. 23 ~ 8. 12, 20일간) 결과 : 의견 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관리는 법”을 “관리는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호 중 “법, 영”을 “법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4조제3항제1호 중 “3인”을 “3명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3인”을 “3명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19인”을 “19명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⑪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 이 경우 개의 및 의결방법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13조”를 “제113조 중 다음”으로, “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”를 “분과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
2.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사항
3.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

제5조의3의 제목 “(위원의 해촉)”을 “(위원의 위촉 해제)”로 하고,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해촉”을 “위촉을 해제”로 하며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해촉”을 “위촉이 해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제5조제2항”을 “제5조의2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

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4(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) ① 위원회 주관부서는 심의 또는 자문 (이하 이 조에서 “심의”라 한다)을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 심의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재심의 횟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안건 처리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하며,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 할 수 있다.

제6조제1항 중 “도시계획”을 “이해관계자 또는 도시계획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있다.”를 “있고, 여비는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.”로 한다.

제2장의 “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”을 “제3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”으로 하고 제9조 뒤에 제2장제2절(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제2절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

제9조의2(공동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이하 “공동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공동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, 다른 법령에서 공동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
2. 서울특별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
3.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

제9조의3(공동위원회의 구성)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공동위원회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위원회

(이하 “건축위원회”라 한다)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.

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.

제9조의4(공동위원회의 운영)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4항부터 제11항까지, 제5조의2, 제5조의3, 제5조의4,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0조제2항제3호 중 “구 도시계획위원회”를 “도시계획위원회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전임계약직”을 “일반임기제”로, “비전임계약직”을 “시간선택제 임기제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구도시계획위원회”를 “도시계획위원회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「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」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직 공무원 인사관리 규칙」”을 “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칙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획단위 비전임 계약직공무원”을 “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15조 중 “「토지이용규제법」”을 “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”으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

사항의 심의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 관한 사항의 사전자문

2. 제2분과위원회 : 영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심의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이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토록 지구단위계획결정된 사항에 대한 심의

<신 설>

② ~ ⑥ (생략)

제5조의3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 다만,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1. ~ 3. (생략)

4. 위원이 제5조제2항에 따른 회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

<신 설>

2.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에 관한사항

3.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5조의3(위원의 위촉 해제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위촉을 해제-----  
-----  
-----위촉이 해제-----  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제5조의2-----  
-----

5.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

〈신 설〉

제6조(자료제출 및 제안설명)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도시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.

제5조의4(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) ① 위원회 주관부서는 심의 또는 자문(이하 이 조에서 “심의”라 한다)을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 심의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재심의 횟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안건 처리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하며,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 할 수 있다.

제6조(자료제출 및 제안설명) ①-----  
-----  
-----  
-----이해관계자 또는 도시계획-----  
-----.

② ~ ④ (생략)

제9조(수당 등) 구청장은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속기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수당 등)-----  
-----  
-----  
-----있고, 여비는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.

제2절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

제9조의2(공동위원회 설치 및 기능)

①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이하 “공동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공동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, 다른 법령에서 공동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
2.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
3.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

제9조의3(공동위원회의 구성) ① 공동

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〈신 설〉

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

- 제10조(설치 및 기능) ① (생략)  
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 
 1. 2. (생략)  
 3.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·연구  
 4. (생략)
- 제11조(기획단의 구성) ①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5명 이

-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 
 ③ 공동위원회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위원회 (이하 “건축위원회”라 한다)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.  
 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.

제9조의4(공동위원회의 운영)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 제4항부터 제11항까지, 제5조의2, 제5조의3, 제5조의4,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3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

- 제10조(설치 및 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  
 ② -----  
 1. 2. (현행과 같음)  
 3. 도시계획위원회-----  
 -----  
 4. (현행과 같음)
- 제11조(기획단의 구성) ① -----  
 -----  
 -----일반임기제-----

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2조(기획단의 운영)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구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한다.

②、③ (생략)

제13조(임용 및 복무 등)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、복무 등은 「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」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직공무원 인사관리 규칙」에 따른다.

② 기획단위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(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) 「토지이용규제법」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」에 따른다.

-----시간선택제임기제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기획단의 운영) ① -----  
-----도시계획위원회  
-----.

②、③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임용 및 복무 등) ① -----  
-----  
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칙」-----.

②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 
-----  
-----.

제15조(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)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-----  
-----  
-----.